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5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 구자근·김선교·박준태

이만희 • 배준영 • 인요한

김석기 • 박형수 • 최수진

정동만 · 송언석 · 박성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&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&D 투자를 견인('22년 기준 민간 전체 R&D의 75.7% 차지)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. 중견기업의 일반 R&D 세액공제율은 8%,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%에 불과하며, 이는 중소기업(25%)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. 한국의 대·중견기업에 대한 R&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, OECD 38개국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.

현재 일부 신성장 ·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&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, 공제 대상 기술이 제 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.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,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,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&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대기업의 일반 R&D 세액공제율은 현재 '수입금액 대비 일반 R&D 비용 × 1/2'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, 그 한도를 2%로 하고 있음. 이로 인해 매출액(수입금액)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&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,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, 이는 기업의 R&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.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,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.

이에 일반 R&D 세액공제율을 중소·중견·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,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%와 10%로 상향 조정함으로써, 기업의 R&D 투자 의욕을 높이고,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나목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)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,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100분의 20

제10조제1항제3호나목3) 중 "100분의 8"을 "100분의 15"로 하고, 같은 목 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)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100 분의 1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) 제10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 · 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1. ·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 구 · 인력개발비(이하 이 조에 서 "일반연구·인력개발비"라

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 여 4년간 일반연구 · 인력개발 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 구 ·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· 인력 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

가. (생략)

- 나.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- 1) (생략)
 - 2)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: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 율

가. (현행과 같음)
나
1) (청해과 간으)

- 1) (연앵과 같음)
- 2)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서,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 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

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: 100분의 20

- 가) 최초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100분의 15
- 나) 가)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: 100분의 10
- 3) 중견기업이 2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100분의 8
- 4)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(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)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일반연구·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× 2분의 1

② ~ ⑥ (생 략)

3) -----: <u>10</u> ----:: <u>10</u> <u>0분의 15</u>

4) 1)부터 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: 100분의 10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